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49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서영교 · 정준호 · 윤준병
임오경 · 박용갑 · 민병덕
박균택 · 박지원 · 이수진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이주민 정착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2.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류자격에 관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3.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4.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등의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5. 그 밖에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센터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이주민 정착지원센터)</u> <u>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u> <u>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u> <u>2.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류자격에 관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u> <u>3.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u> <u>4.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등의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u> <u>5. 그 밖에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u>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센터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